

大學의 自律性 伸張의 조건

韓 駿 相
(延世大 教育學科 助教授)

I. 머리말

“……대학교육에 있어서는 學生增員에 따라 시설을 확충하고 연구활동과 학문의 국제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대학의 自律性 保障에 힘쓰고 卒業定員制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 대학의 質的 向上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¹⁾

“전반적인 他律風土 때문이었겠지만, 어떤 때는 「이런 일은 文敎部가 처리해 주었으면……」하고 기쁜 적도 있었습니다. 지난날을 돌이켜 볼 때 改革을 단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학교의 자체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졸업정원제 실시, 학원안정 도모 등을 위해 他律이 개입됐던 것이지만 이젠 그 단계가 지났다고 봅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自律權을 부여할 생각입니다.”²⁾

대학이 自律權을 행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정부 행정당국의 교육적 관심은, 구체화될수록 바람직하다. 韓國 大學教育의 성숙을 위해 대학자율성을 보장을 언급한 대통령의 談話文과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문교부 장관의 입장은 대학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해방 이래, 한국의 대학기관이 大學運營을 위해 실질적으로

자율권을 보장받아 왔다고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 해방 이래 학원사태에 대한 행정당국의 비상한 憂心, 학교당국의 교육적 限界狀況, 행정당국과 학교당국의 자율에 대한 학생들의 끊임없는 疑視 등은 한국 대학의 자율권 행사를 짐작시켜 놓았던 것이다.³⁾

대학기관의 자율성이 실질적으로 행사되기 위해, 학교당국자와 문교행정자들이 실질적으로 고려해 두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대학자율의 뜻은 무엇인가? 본 글에서는 대학기관에 대한 概念把握과 대학의 자율성이 발휘되기 위한前提條件이 간략하게 논의된다.

II. 학문의 自由와 학원의 自律

대학의 自律性 伸張을 논의하기 전에 본 글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가지 가정을 미리 밝혀 두자. 본 글은 대학의 자율권 보장·행사의 程度는 국가·시대·사회적인 상황에 따라 동일하지 않고 또 동일할 수도 없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 대학의 자율권 보장·행사 정도의 시대상황적 차이는 比較教育學的으로도 타당하다.⁴⁾

대학의 자율권이 의미하는 뜻은 무엇인가? 대학의 자율권(corporate autonomy of higher learning institution)에 대한 이해는 학문의 자

유(academic freedom)를 논의할 때 분명하게 제시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학원의 자율은 高等敎育機關에 합법적으로 소속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향유해야 될 학문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의 사회·정치·행정적自治能力이라고 정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학문의 자유라는 社會的 理念을 실현해 주기 위해 필요한 하나의 조건이 학원의 자율성 보장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문의 자유는 무엇인가? 학문의 자유는, 진리탐구를 위해 창조·비판적인 知性을 구사하는 고등교육기관의 학문적 활동에 있어서, 불필요한 勢力에 의해 행사되는 간섭·위협으로부터의 면제라고 정의될 수 있다. 왜 學問的 活動에 있어서 불필요한 세력에 의한 간섭·위협으로부터의 자유가 대학·대학인에게 보장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미국대학 교수협의회(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Professors)와 미국대학협의회(Association of American Colleges)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들은 公益(The Common Good)을 위해 운영되는 곳이다. 개인적인 교사(연구가)나 대학기관 자체 안의 利害關係를 확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곳이 아니다. 공익은 貞理를 찾기 위한 자유스런 연구와 찾은 결과에 대한 발표·설명에 있어서 자유성 보장의 정도 여부에 달려 있다.”⁵⁰⁾

미국대학협의회와 미국대학교수협의회에 의하면, 고등교육기관이 공익을 위한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적 활동을 전개하는 이상, 대학의 학문적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결국, 학문의 자유는 학문의 자유신장에 관계된 3가지 下部觀點을 수용하고 있는 사회적 이념으로 파악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첫째 개인적인 학문적 활동의 차원에서 공익을 위한 學問活動의 보장, 둘째 대학기관의 행정적 차원에서 공익을 위한 대학기관의 자율성 보장, 세째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익을 위한 사회·정치적 지원보장의 3가지 관점을 수용하고 있는 개념으로 파악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학문의 자유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최소한 네 가지 要素를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네 가지 요소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학문의 자유에 관해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 즉, 누가 어떤 내용의 학문적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 동안 누구로부터 어떤 간섭·위협·제재를 받지 말아야 된다는 말인가로 질문할 수 있다. 학문의 자유를 이해하기 위해 학문의 자유를 영위할 대상, 보장 받아야 할 내용, 간섭의 주체, 간섭의 내용·종류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학문의 자유에 관계된 네 가지 요소를 논의할 때, 대학기관의 自律問題가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학문의 자유는 누가 영위해야 되는가? 대답은 대학에서 학문적 활동을 전개하는 개인과 대학교육기관이라고 제시될 수 있다. 한마디로 고등교육기관에 소속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대학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 즉 강의·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각 직급의 教授, 研究者, 行政家 등이 해당된다. 심지어 학생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 自治機構의 속성을 갖고 있는 대학기관의 단체들도 학문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 예를 들어, 교수집단대의기구, 공식적인 학생자치기구, 각 학과, 학부, 대학원, 각종 연구소, 대학기관전체가 학문적 활동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 한마디로 학문의 자유를 영위해야 할 對象은 공익을 위한 학문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고등교육기관에 종사하는 構成員·機關인 것이다.

둘째, 보호되어야 할 公益活動은 어떤 것인가? 한마디로 고등교육기관에서 의도적으로 진행시키는 학문적인 활동 모두가 학문의 자유를 구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認知, 活動展開가 보장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가르치고, 배우는 자유, 연구·발표의 자유, 학문적 의사표시의 자유, 해석의 자유, 대학기관소속원에게 책임을 물게 될 교육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에의 참여 자유, 강사 초빙의 자유 등이 공익 추구용 학문활동으로 포함될 수 있다. 물론 고등교육기관에서 전개되고 있는 학문활동은 구체적으로 대학의 세 가지 사명을 완수해 주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즉 첫째로 학생들에게 도덕적·문화적 유산의 傳授를 위한 교육활동 사명(education), 둘째로 지식의 체계화와 새로운 지식의 창출을 위한 연구의 기능(research), 세째로 고등교육기관 자체의 지

성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학문적 전통·풍토유지(intellectual tradition)에 관한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

세째, 학문의 자유를 위해 어떤 종류의 위협·간섭·제재가 대학교육기관에서 배제되어야 하는가? 학문의 자유를 위해 배제되어야 할 간섭·위협행위들은 수없이 많다. 다양한 것들 중에서도 우리 대학인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요한 것들이 있다. 그것은 연구될 내용에 대한 研究權의 제약, 연구논문 발표에 관한 간섭, 출판금지, 연구비 지급에 대한 비학문적인 기준 설정 강요, 강좌 설정에 대한 비학문적인 부당한 제약, 일반 강의내용에 대한 불필요한 정치·행정적 규제, 종교적인 선서 강요, 사회·정치적 선서 요구, 규정·법률에 의하지 않는 정계·파면, 부당한 심리적·정치적 위협·간섭, 필요 이상의 통제를 염두에 두는 규제·내규·남발 등은 대학기관에서의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는 내용들로 지적될 수 있다.

네째, 학문의 자유는 누구로부터 침해받지 말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 모든 세력들에 관한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高等教育機關에 있어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세력들은 크게 두 가지 형식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첫째, 고등교육기관 자체내의 침해세력을 지적할 수 있다. 학문의 자유를 대학기관에서 대내적으로 위축·침해할 수 있는 세력으로 개별적 학생, 학생의 代議機構, 개별적 동료교수, 공식·비공식적 教授代議議決機構, 교육일반 행정보직자, 대학 최고행정집단, 이사회 등을 지적해 볼 수 있다. 둘째, 교육기관 밖의 대외적인 학문의 자유 침해세력으로 행정부 수준의 각종 학사관계 행정기구, 민간주도형 각종 사회·정치·경제·종교·문화부분의 이해관계 집단, 일반국민 등을 지적해 볼 수 있다.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세력 중에서도 가장 실질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세력은 두 가지 정도로 간추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내적으로는 대학 최고행정집단으로서의 大學機關長과 대외적으로는 문교행정 관계자를 지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대

학의 기관장, 문교행정책임자는 학문의 자유를 위한 학원의 자율성 보장의 실질적 決定要素로서 판단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大學行政부는 대학에 소속한 개인들의 학문적 관심이 실제화되도록 학원의 자율·교육적 방향을 현실적으로 결정하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또한 문교행정당국은 대학기관의 교육적 방향이 이념적으로 공익 증진을 위해 실제화되도록 대학기관의 教育的方向을 정책적으로 가늠해 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공익을 위한 학문의 자유가 위협당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는 대학행정당국과 문교행정당국이 각기 제시하고 있는 대학교육의 방향에 하자가 있을 수도 있음을 시사받게 된다.

다시 말해서 대학기관 스스로 학원의 자율을 속박, 의도적으로 폐기하고 있을 때, 學問의 自由는 스스로 위축당할 수 있다. 또한 문교당국이 대학기관 스스로 진흥시켜야겠다고 제시한 教育的 要求에 부응하는 구체적인 조력 방안을 상비하고 있지 못할 때, 학문의 자유는 또 한번 쇠퇴해질 수 있는 것이다. 즉 대학기관의 학문활동과 자율권 행사에 대한 이성적인 說得方案이 결여되어 있을 때, 학문의 자유는 대학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III. 학원 자율보장의 條件

학문의 자유를, 대학에서 가르치는 教授라는 신분집단의 학문적 활동에만 국한시켜 보자. 그렇다면, 학문의 자유와 학원의 자율간에는 두렷한 因果關係가 경우에 따라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게 된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교수의 학문활동이 제약받고 있는 상태에서도 학원의 자율을 행사했던 대학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학원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면서도 학문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준 국가들도 있었기 때문이다.⁷⁾

그러나 학원의 자율을 학문의 자유라는 社會·政治·教育的 理念의 하부개념이라고 인정했을 때, 학문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 학원의 자율은 보장될 수가 없게 된다. 즉, 대학 행정집단이 스스로 學園의 自律性을 남용하거나 포기할

때, 문교행정이 學問의 自由를 이해하지 못할 때 고등교육기관의 교육적 방향은 불분명하게 된다. 국가적인 公益事業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활동자체가 불분명하게 된다.

공익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學問的 活動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다. 첫째, 학원자율에 관한 문교행정당국의 입장을 비판하는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검증해 보아야 한다. 문교당국이 高等教育機關이 요구하는 학문의 자유, 학원의 자율을 과다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들이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韓國 教育界에 회자되고 있다. 문교 행정당국에 대한 비판은 과장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수긍이 가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문교 행정당국이 해방 이래 학문의 자유, 학원의 자율성을 과잉으로 요구하여 왔었기 때문이다. 해방 이래, 문교 행정당국은 학문의 자유, 학원의 자율에 대해 무수히 언급해 왔다. 각종 규제, 시행령들도 제도화시켰다. 결국 어느 누구도 감히 학원의 자율에 관한 문교 행정당국의 모든 言及, 施行令, 規制 등을 학문의 자유, 학원의 자율을 위해 하나의 통일된 양식으로 구체화시킬 수 없다는 인상을 주게 되었다. 따라서 문교 행정당국 스스로 그동안 제시한 갖가지 규제, 시행령, 법규 등을 체계적으로 냉철하게 통일된 양식으로 묶어보는 일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한마디로 학원의 자율, 학문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한 첫번째 조건으로서, 문교 행정당국이 갖고 있는 학원의 자율, 학문의 자유에 관한 각종 지침들을 체계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부각되게 된다. 학원의 자율, 학문의 자유에 관한 지침의 體系化 過程 중, 간추리져야 될 것은 공익의 관점에서 과감히 정리될 필요도 있다.

학원의 자율, 학문의 자유를 위한 두번째 조건은 대학행정 최고 책임자의 役割變化에 관한 것이다. 대학기관의 최고 행정책임자들은 대학기관에서 발휘될 자기들의 역할을 네 가지 정도로 記述·受容하고 있는 것 같다. 즉 학교기관이라는 체제를 이끌어 나가는 行政家,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政治家, 대학구성원들이 조직 내에서 야기시키는 각종 갈등과 이견들을 조정하는

解決者, 동의·합의 등을 유도해 내는 회의 進行者 및 社會者의 역할을 개별·혼합적으로 발휘하는 사람들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 그러나 大學의 現實은 관료주의적 행정조직의 논리, 민주주의의 논리, 인화주의의 논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만은 없다.⁸⁾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대학의 현실은 대학기관이 일반관료주의 체제에서 나타나는 식의 目標設定의 명료성, 합리성, 최신기술의 도입 등을 제도화하고 있지 않다. 둘째, 대학기관은 모든 일을 엄격한 동의·합의 질차에 의해 처리해 나가는 民主的 性格을 실천적으로 강하게 지니고 있지도 못하다. 세째, 대학기관 종사자 사이에서 야기되는 갈등의 내용·형태는 대학의 理想을 파괴할 수 있을 만큼 부정적이기까지 하다. 따라서 대학총장이 행정가, 의견조정자, 회의진행자 민주주의 신봉가로서의 역할만 고수하는 한, 그의 指導力은 비효율적인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다다르게 된다. 왜냐하면 대학총(학)장직 자체가 대학기관에서의 행위, 목적, 정치적 힘, 경험과 역량에 관한 불명료성을 지니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이다.

대학기관의 현실은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organized anarchy)」로 비유하는 편이 보다 타당하다. 일반적으로 각 개인은 대학기관에서 자율권을 學問活動과 연결시켜 제 나름대로 만족스럽게 영위하고 있다. 교수들은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한다. 학생들도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한다. 엄격한 통제·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다. 어느 개인 혼자와 이익·독점을 위해 대학교육에 관한 決定들이 생성되거나 통제되지는 않는다. 한마디로 대학기관의 현실은 대학기관에서 작용하고 있는 갖가지 要素들이 느슨·영성하게 연결되어 있는 (loosely coupled) 체계일 뿐이다.¹⁰⁾ 대학기관에서는 |상당한 정력과 시간이| 意思決定을 자율적으로 행사하는 사람들간에 나타나는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한 원충지대 설정용으로 소모되기까지 한다. 한마디로 대학기관의 현실은 社會的 變化에 대해 불확실하고, 일관되지 못한 취사선택의 원리, 심리적으로 이원성이 심한 대학 운영방식을 갖고

있는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의 실제를 현실화시켜 놓고 있다. 따라서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로서의 대학기관에서 종사하는 最高責任者들은 최소한 세 가지 학사·행정 문제에 적면하게 되는 것이다. 즉 어떻게 대학교육기관에 합당한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가? 종(학)장의 경험을 어떻게 대학기관의 현장에 반영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종장이 행하는 職務狀態의 성공·실패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에 대해 난감하게 된다. 직무상 대학 최고 책임자의 影響力이 불확실해지면, 불확실해 질수록 학문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한 학원의 자율성 발휘 역시 불명료해지게 된다.

학원의 자율성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大學機關長은 최소한 세 가지 점을 대학기관 최고 책임자로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존 대학기관 운영에 관계된 意思決定의 기능과 運營過程의 합리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둘째, 대학교육에 관계된 計劃立案에 있어서 전통적인 사고 방식의 궤도를 한번쯤 수정해 볼 필요도 있다. 세째, 사회적 責務性에 관한 대학기관의 반응양식, 절차, 평가 방식을 재고해야 한다.

대학기관 최고 책임자가 행할 수 있는 大學運營에 관한 원초적인 점검, 계획입안의 혁신,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재음미는 전문성 추구(Professionalism)와 이성적인 유희성(reasonable playfulness) 발휘로써 점검되어야 한다.¹¹²⁾ 기관장 자신의 전문성 추구와 교수들에게 전문성을 추구하도록 실체적으로助力하는 일은 공익에 대한 外部勢力의 압력을 원리적으로 방어해 주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기관장에 의해 발휘되는 이성적인 유희성은 대학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法則·規則의 可能性을 탐진, 추구하기 위해 시도되는 계산된 잠정적인 여유·해학으로 기능을 발휘해 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대학기관의 자율에 관한 物理的處方을 유연성, 정치적 수반, 정신적인 여유, 이성적 유희로써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기관으로부터 이성적인 유희성과 전문성에 관한 理解를 읽을 수 없을 때 학문의 자유, 학원 자율의 自生的인 限界를 경험하게 될 뿐이다.

고등교육 학사관계 민간주도형 利益團體의 육성과 組織的인 活動의 요청이 학문의 자유와 학원의 자율 보호를 위한 세번째 조건이 된다. 예를 들어 미국의 대학교수 및 대학은 1915년 美國大學教授協議會(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Professors)를 발족했다. 카나다는 1955년 카나다大學教職協議會(Canadian Association of University Teachers)를 발족했다. 호주 역시 1952년 澳洲大學教職聯邦(Australia Federation of Australian University Staff)을 창설했다. 미국대학교수협의회는 학문의 자유·보호에 있어서 법적으로 물리적인 執行力·拘束力を 행사하지는 못한다. 단지 고등교육기관에게 윤리·도덕·정신적 支援을 대학기관·행정 당국에 호소할 뿐이다. 그러나 윤리·도덕적인 지원에의 호소는 학문의 자유에 관한 社會的條件을 점검·정비해 두기에 충분한 만큼 성공적인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학문의 자유·학원의 자율성 보장에 관한 네 번째 조건은 학문의 자유에 관한 一般輿論을 진작시키는 것이다. 즉 일반 국민이 학문의 자유와 학원의 자율은 公益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여론을 조성시키는 것이다. 즉 학문·학원의 자유가 부당히 위협받을 때, 국민들이 대학의 도덕적·심리적 지원자가 될 수 있는 雾靄氣를 造成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학문의 자유·학원의 자율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나 관계자들의 이해 정도도 빈약하다. Harvard 대학교총장 재임 시절의 Charles W. Eliot, Cornell 대학의 Andrew D. White 총장, Chicago 대학의 William R. Harper 총장, 독일 Berlin 대학의 총장이었던 Fichte 등은 학문의 자유·학원의 자율이 공익활동, 사회발전의 前提條件임을 일반인에게 강력히 부각시킨 바 있다. 그 결과 미국의 국민은 학문의 자유와 학원의 자율의 必要性을 대학교의 이상으로 認知하게 되었던 것이다.

IV. 맺는 말

문교 행정 당국의 力量, 대학기관 최고 책임자의 새로운 役割 認知·發揮, 대학교육기관과 관련된 公益團體 育成, 학원의 자율·학문의 자유

에 관한立法活動, 학문의 자유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輿論換氣 등은 대학의 자율, 학문의 자유를 진작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가 되는 것이다. 네 가지前提를 염두에 두면서, 학원의 자율과 학문의 자유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특별히 학원의 소요를 야기케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생들의 문제를 學園自律維持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즉, 학원내에서 학생소요 문제는 대학생들이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大學生文化의 특수성 때문인지, 학원 행정집단의 大學運營上의 문제인지, 아니면 사회적인病理現象과 결부된 사회문제인지 등을 체계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학원의 자율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요인들에 관한體系的인研究는 대안·처방의 마련, 투입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기초적인 작업인 것이다. *

〈註〉

- 1) 전 두환 대통령의 서정 연설 중 대학교육에 관한 요지, 「교원 복지 신보」, 1983. 10. 31. p. 1.
- 2) 권 이혁 문교부장관의 대학 자율에 관한 사견, 「조선일보」, 1983. 10. 25. p. 10.
- 3) 한준상, 「한국 대학 교육의 회생」(서울: 문음사, 1983).
- 4) H.W. Baade, (ed.), *Academic Freedom: the Scholar's Place in Modern society* (Dobbs Ferry, N.Y.: Oceana Publications, 1964).

- 5) 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Professors, *The 1915 Declaration of principles: Academic Freedom and Tenure* (Washington, D.C.: The Association, 1915). 참고: Hook, S. *Academic Freedom and Academic Anarchy* (New York: Dell Publishing, 1971). Hook은 학문의 자유는 고등교육기관이 누려야 될 특별한 자유로서 학문공동체 발전, 지속의 종주라고 판단했다.
- 7) E. Ashay, *Universities: British, Indian, Africa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66).
- 8) 이형행, 학문의 자유: 현상과 인식, 1978, 2(1), pp. 130—149, 하인호, 대학교육 개혁의 반성과 과제, *세교육*, 1983. 12. pp. 62—68. 이형행은 학문의 자유와 학원의 자율은 구분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형행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학문의 자유와 사학의 자유, 학원자치, 교육의 자유 등과 혼용되어 쓰여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하인호는 대학의 자율을 보장시키기 위한 모형으로 관료적 모형, 교수중심 모형, 정치적 모형을 들고 있다. 하인호는 한국 대학의 자율모형으로 세 가지 모형 중 어느 한 가지 모형도 도입이 곤란함을 시사하고 있다. 보다 필요한 것은 자율을 지킬 수 있는 주체형성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 9) M.D. Cohen & J.G. March, *Leadership and Ambiguity* (New York: McGraw-Hill, 1974).
- 10) K.E. Weick, "Educational organizations as Loosely coupled system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976. 21. pp. 1—18.
- 11) Cohen & March, op. cit.